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 전면 허용 등 및 청소년
출입·고용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 제외〉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4979호)

2025.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	3
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9
3.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 제외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소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이 개정되어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투명유리창 설치 기준 등이 통일되어 일반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청소년실을 설치할 실익이 줄어들었음.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노출 위험이 감소하여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아닌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실 별도 설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한편,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함. 그러나 업주가 아닌 종사자에게는 이러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청소년 보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하고자 함(안 제29조).

Ⅲ. 검토의견

1.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가목5) 삭제 및 나목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5. ----- ----- ----- ----- ----- ----- ----- ----- ----- ----- ----- ----- ----- ----- -----.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 4) (생략)	가. -----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 11) (생략)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 7) (생략) <u><신설></u> 6. ~ 8. (생략)	<u><삭제></u> 6) ~ 11) (현행과 같음) 나. ----- 1) ~ 7) (현행과 같음)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 8.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조제5호1)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²⁾는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6. 10. 28.)에 따라 일반실과 청소년실의 투명유리창 설치기준이 통일되었고,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 이용에 개방성과 안전성이 강화되었는바, 일반실과 청소년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실익이 줄어들어 측면이 있음.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항 목	시설 기준	
	개정 전	개정(2016. 10. 28.) 후
3. 통로 및 칸막이	가.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③ 법 제2조제5호가목 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항 목	시설 기준	
	개정 전	개정(2016. 10. 28.) 후
		나.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객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u>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u> 다. <u>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u>
5. 청소년실(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u>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두 지점 간 길이는 1미터를 유지한다)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u>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u>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축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u>청소년실과 통로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u>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아닌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여 청소년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청소년의 출입을 전면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도 노래연습장에 일반실과 별도로 구분하는 청소년실의 경우 ① 영업주 및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②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 표시판 및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 특수조명기구 설치를 금지하고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40럭스 이상인 조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시설기준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청소년의 출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의 관리 소홀 등으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일탈 장소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는 점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노래연습장의 투명유리창 설치기준이 개방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실과 청소년실 구분 없

이 동일하게 적용(통로와 접한 칸막이에 1m² 이상 투명유리창 설치, 객실내 잠금장치 설치 불가)되고 있으므로, 청소년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할 실익이 낮아진 점과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고용은 금지하며 청소년 출입가능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제한하고 노래연습장 내에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업소 내 주류 보관 및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경우에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행정처분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이 자주 출입하여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졌고, 2016년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투명유리창 설치기준을 통일하여 청소년실과 일반실을 구분할 실익이 줄었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개정안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나목1)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5. ----- ----- ----- ----- ----- -----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나. ----- <u><삭 제></u>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1조(등급분류)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는 영업(대통령령⁴)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을 말함.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⁵⁾ 제9조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②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로 설치할 것
3.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 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⁶⁾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3호의2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48조제1항제5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⁷⁾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인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의2·제6호 등을 위반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⁸⁾)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게임제공업소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 근로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제공함에 따라 고용된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모든 등급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5호의2 및 제35조제2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이용자가 게임물 등급구분을 위반하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제28조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위반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자인 청소년은 동 규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여가활동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청소년 근로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3.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대상에서 종사자 제외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부과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 ⑤ (생략)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u> 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u>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u> ----- ----- ----- -----.

현행법 제29조제6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28조9)는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 제외)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¹⁰⁾에

9)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8]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한다.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데, 해당 업주가 아닌 종사자에게까지 이러한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해당 업주에게만 부여하고, 종사자는 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자의 나이 확인 및 출입 금지 의무¹¹⁾와 달리 해당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의무는 일종의 시설관리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 응대 및 서비스제공이 주

11) 현행법 제29조제2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로 하여금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9조제8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하게 된 경우 해당 업주는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해당 업주뿐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임.

된 업무라 할 수 있는 종사자에게까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현행법 제28조제5항¹²⁾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에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해당 업소에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 부과는 해당 업소의 영업자로 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의 유해표시 의무를 해당 업소의 시설관리 주체인 업주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임시 근로자 등 종사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하여 경기도는 청소년 유해표시의 표시의무자는 해당 업소의 주체인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종사자의 경우 표시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도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의 표시의무자를 업주만으로 규정하고 종사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12)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문 의 처

02)6788-5645
